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751
----------	-------

발의연월일 : 2026. 10. 2.

발 의 자 : 윤후덕 · 김성범 · 김문수
김정호 · 박민규 · 백혜련
백승아 · 임미애 · 한정애
김성희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 법률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세무사 및 사무직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를 요청하는 것을 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탁 근거 조문에 세무사에 대한 조회만 포함하고 사무직원에 대한 조회는 빠져 있어, 위탁 사무에 사무직원에 대한 조회 업무도 포함하려는 것임.

또한, 불법적인 세무 영업행위에 대한 징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세무서비스 시장의 질서 유지를 위한 자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 중 경징계 업무를 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무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업무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제3항).

나. 재정경제부장관의 세무사에 대한 징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
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20조의3제4항).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무사등록에”를 각각 “세무사등록 및 사무직원 결격사유 조회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2조의5에 따른 사무직원

제20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7조에 따른 징계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업무 중 한국세무사회의 회원인 세무사에 대한 징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제9항에 따른 세무사징계위원회를 갈음하는 의결기구를 지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3(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 ② (생략) ③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u>세무사등록에</u>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u>세무사등록에</u>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 설></u> <u><신 설></u>	제20조의3(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세무사등록 및 사무직원 결격사유 조화에</u> ----- ----- <u>세무사등록 및 사무직원 결격사유 조화에</u>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12조의5에 따른 사무직원 ④ 제17조에 따른 징계에 관한 <u>재정경제부장관의 업무 중 한국세무사회의 회원인 세무사에 대한 징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제9항에 따른 세무사징계위원회를 같은 하는 의결기구를 지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u>